부록 1. FAQ

 단계 명
 기획단계
 활동 명
 코드
 A000

| 1. | 기획단계 | |
|--|---|--------------|
| | d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DB 구축사업 내용은 [입니다. 감리를 받아야 합니까? | 참고 |
| | 8억 원인 경우 시행령 제71조 (정보시스템 2가 5억 원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다. | A100 |
| Q02) BPR 사업 2억 원과 이것과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려고 합니다. | 련한 SW 개발사업 4억 원 총 6억 원 규모의 감리를 받아야 합니까? | 참고 |
| | 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에 해당하지 과 통합발주하는 경우 감리를 해야 합니다. | A100 |
| | 사업의 사업비가 2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란 제외한 사업비를 의미합니까? | 참고 |
| A) 아니오. 총사업비를 의미합니다. 감리기준 별표1 감리대가 산정 정이 없으므로 총사업비로 보는 | 기준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아무런 단서 규 | A100 B100 |
| Q04)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지만 유지보수비인 사업은 의무감리 | 그중에서 2억 원이 개발비이고 8억 원은 대상에 포함됩니까? | 참고 |
| |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비는 하드웨어·소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다. | A100 |
| Q05) BPR, ISP 또는 EA사업의 감리다 | 내가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 참고 |
| | 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를 | A300 |

 단계 명
 기획단계
 활동 명
 코드
 A000

| Q06) 지방사립대학인데 개발비가 5억 원 이상이면 의무감리 대상입니까? | 참고 |
|---|------|
| A) 예. 감리대상입니다. | |
| 법 제 제2조 3호에 따라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해당되어 감리대상기관입니다. 개발비가 5억 원이므로 사업비 규모로도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됩니다. | A100 |
| Q07) 공공기관이 해외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해외 현지 업체가 수주할 확률이 큰데, 이 경우 의무감리 대상인지? | 참고 |
| A)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 A100 |
| Q08)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이면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 참고 |
| A) 아닙니다. | |
| 사업비가 5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 및 행정기관 등의 장이 필요성 판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감리를 시행해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A100 |
| Q09) 하나의 사업이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연도의 사업은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 측면에서 의무감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합니까? | 참고 |
| A) 계약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
| 연차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규모 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가 의무감리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A100 |
| Q10) 전자정부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참고 |
| A)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 3호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기관입니다. | |
|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 정관 등을 확인함으로 써 알 수 있습니다. | A100 |
| Q11) 특성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므로 대부분의 시스템이 감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규모 사업까지 감리를 해야 합니까? | 참고 |
|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
| 1억 원 미만의 소액사업 중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 시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A100 |

| Q12) 의무감리 대상 기준에서 말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 입니까? | 참고 |
|--|------|
| A) 하드웨어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완제품 등의 구입비용을 말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또는 시스템 공급 사업자가 이미 생산 또는 조립된 완제품을 단순히 구입하여 납품하는 서버, PC, 네트워크 장비 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물품의 구입비용을 제외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의무감리 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A100 |
| Q13) 의무감리 대상 기준에서 말하는 "총사업비", "사업비"는 계약금액 기준입니까? 아니면 예가(예정가격) 기준입니까? | 참고 |
| A)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리대상 해당 여부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최초 편성된 예산 보다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는 경우 예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A100 |
| Q14) 의무감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참고 |
| A) 법에는 명시적인 처벌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법에 의해 의무화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결과 등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A100 |
| Q15) Man/Month를 기준으로 감리대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참고 |
| A) 감리기준 별표 1 제2호 "라" 항의 상주감리는 투입 공수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추가 감리 및 상주감리시 M/M를 기준으로 감리대가를 계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A300 |
| Q16) 감리 대가 또는 예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참고 |
| A) 감리기준 별표 1에 감리대상 사업비의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A300 |

 단계 명
 발주준비단계
 활동 명
 코드
 B000

| 2. | 발주준비단계 | | | | |
|---|--|------|--|--|--|
| Q17) BPR, ISP, I 동일합니까? | EA사업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감리절차도 개발사업과 | 참고 | | | |
| A) 예. 시행령 제72조 2항의 감리절차를 준용하면 됩니다. | | | | | |
| |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하며, 이런 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 | | | |
| 일반적으로 김 보호, 기밀유 | 흥원과 같은 감리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삼리는 감리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안전보장, 사생활 지 또는 공신력확보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B100 | | | |
| Q19) 상주 또는 추가 감리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감리절차에 따라 감리를 실시해야 합니까? | | | | | |
| A)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감리절차는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감리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 | |
| Q20) 감리원 투입 | 공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 참고 | | | |
| A) 감리원 투입공수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명시적인 기준은 없으나 감리기준 별표 1의 감리대가 산정식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투입공수를 산정할 수는 있습니다. 산정된 투입공수는 해당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공수를 의미합니다. | | | | | |
| 구분 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단위 MD) B200 | | | | | |
| 요구정의단계 감리 포함시 | 감리인력 투입공수 $=22.13 	imes \left(rac{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1억원} ight)^{0.63}$ | | | | |
| | 감리인력투입공수 = $19.78 	imes \left(\frac{$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1억원} \right)^{0.64} | | | | |

 단계 명
 발주준비단계
 활동 명
 코드
 B000

| Q21) 정보시스템 설비공사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합 발주할 때, 어떤 업체에게 감리를 받아야 합니까? | 참고 |
|---|--------------|
| A) 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5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 에게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 B100 |
| Q22) 추진하는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 참고 |
| A) 사업의 주요 내용이 정보통신 설비의 공사 인지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분석/설계/구현 등을 통한 시스템 개발사업 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B100 |
| Q23) 감리제안요청서에서 최소 감리기간 도입을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고 |
| A) 통상적으로 감리법인은 감리원들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단계 감리와 최종단계 감리의 경우, 현장 감리기간을 5일간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착수회의, 보고서 작성, 그리고 종료회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실질적인 검토 및 점검기간은 2~3일 정도만 확보됩니다. 사업자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할 경우 검토 및 점검을 2일간도 하지 못하고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실있는 감리 수행을 위해 최소 감리기간 7일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만, 사업이 소규모일 경우는 예외로 5일 이내의 감리기간도 가능합니다. | B100 C100 |

 단계 명
 발주단계
 활동 명
 코드
 C000

| 3. | 발주 단계 | |
|-------------------------------------|---|------|
| Q24) 감리대상 사업의 있습니까? | 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감리법인이 감리 입찰에 참여할 수 | 참고 |
| A) 감리 입찰에 참여 | 여할 수 없습니다. | |
| 사업자와 감리계 | E (감리발주 및 계약) 4항에는 독립성의 확보를 위해 세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리대상 세의 경우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감리 입찰에 참여할 수 | C200 |
| | 입업체 제한을 위한 업체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리법인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하여야 합니까? | 참고 |
| 요건을 갖추어 등 |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등록을 한 감리법인만 감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지 않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서는 안됩니다. | C200 |
| | 을 발주할 때, 감리법인 선정 및 대금지급 등까지 사업자에게 ey) 발주해도 됩니까? | 참고 |
| A) 안됩니다 . 별도의 | 리 감리예산을 확보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 |
| 또는 사업자에 체결하여서는 이 | (감리발주 및 계약) 4항에는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나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턴키 발주의 경우 사업자 인이 되거나 감리법인 선정을 수행하게 되므로 감리의 나치게 됩니다. | C200 |
| | ·계 또는 2단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1 있는데, 감리용역을 발주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 참고 |
| 규정하고 있습니 이전에, 수행하지 합니다. 다만, 상 | (감리 실시시기) 1항에는 3단계 감리와 2단계 감리를 니다.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분석단계말 이 않는 경우에는 설계단계말 이전에 감리법인을 선정하여야 주/추가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감리대상사업 계약 체결 후 감리법인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C200 |
| Q28) 감리용역에 무엇입니까? | 대한 계약시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입찰/계약방식은 | 참고 |
| A) 감리기준 제6조 | (감리 발주 및 계약) 2항~3항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C200 |

| 단계 명 | 발주단계 | 활동 명 | _ | 코. | 드 | C000 |
|-------------------------|--|------------------------------|---|--------------|------|-----------|
| 방법" | | 것을 권고하 |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사고 있으며 이 경우에 감태 사고 자장하고 있습니다. | | | |
| Q29) 좋은 | 감리법인을 선정하기 위 | 한 기준과 9 | 요령은 무엇입니까? | | 춛 | 함고 |
| 발주7 이루0 | 자가 감리 업무를 이해하고 서지게 됩니다. | 그 감리용역 | 성된 감리팀의 선정이 중의 을 잘 관리해야 품질 높은 ? | · · · 갘리가 | C400 |) |
| 유사한 | | 있고 다양히 | 로 해당 사업 또는 해당 / 사고 풍부한 감리 경험을 이 좋습니다. | | | |
| | 제안서에 감리법인이 C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하 | |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가 ? | 종종 | 춛 | 남고 |
| 감리법 표를 : 감리시 | 인이 제시한 다양한 지원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 . 사항을 구 그 이것을 토 | 감리 업무 범위뿐만 (체적으로 명시한 감리 과업 E대로 요구정의, 설계, 종료 1 있는지를 점검하면 효과? | . 단계 | C500 |) |
| | | | 조치 확인을 하지 않고 다음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춛 | 함고 |
| 시정조 감리기 결과 되도록 | 치 확인을 하는 것이 바 준 제8조~제9조의 요구? 확인의 시기는 규정되어 | 람직합니다. 정의 단계 및 있지 않습 | 서는 사업자의 시정조치 왼 ! 설계단계 감리의 경우 시경 합니다. 시의 적절한 시정을 할 이내에 시정조치 확인을 | 정조치 조치가 | C500 |) |
| 10일간 | | | , 5일간 10명이 감리하는 같습니다만 어떤 것이 / | | 춛 | 함고 |
| A) 사업- | 구모에 비해 짧은 감리 | 일정은 | 감리원에게 부담을 주게 | 되며 | | |

C500

감리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50MD의 감리원을 투입하게 될 경우 5일 X 10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보다 10일 X 5명 또는

7일 X 7명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편이 좋은 감리 품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리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리

제안요청서에 최소 감리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 단계 명 | 실시단계 | 활동 명 | _ | 코드 | D000 |
|------|------|------|---|----|------|
| | | | | | |

| 4. | 실시 단계 | |
|----------------------------------|---|------|
| Q33) 감리원은 현장? | 감리 기간 중에 감리현장에 100% 상주하여야 합니까? | 참고 |
| 제안 당시부터 (100% 상주해야히 | 부서 등에 따라 상주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장감리 기간동안 100% 상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하고 계획서 상에 현장 감리기간 중 일정 기간만 참여하기로 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300 |
| Q34) 감리 상세점검험 처리하는 방법은 | 항목, 일정 등 감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무엇입니까? | 참고 |
| 확인하고 관리하 반영합니다. 단, | 경되는 사항은 감리법인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하며,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는 최종 변경된 사항을 계약과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변경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D300 |
| | 시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리결과에 사업자, 감리법인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은 | 참고 |
| 있으나, 조정이 의견대로 보고사 발주자와 협의하 |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리법인은 자신의 서에 기술하여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사여 결정한 경우 시정조치 확인 요청시 "반영 불가"로 인에 통보하면 됩니다. | D400 |
| | 을 매 회차별 감리시행 마다 실시하지 않고, 차기 감리에서 보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참고 |

| 단계 명 실시단계 | 활동 명 | - | 코드 | D000 |
|-----------|------|---|----|------|
|-----------|------|---|----|------|

A) 회차별 감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 되는대로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회차별 감리 시점 사이에 기간이 긴 경우, 차기 감리에서 전기감리 시정조치를 확인 하는 것은 이미 지나버린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되기 D400 때문에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차별 감리의 결과를 반영하고 난 후 지체 없이 시정조치 확인을 받고,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보완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7) 시정조치 확인 결과, 감리법인의 지적사항이 모두 처리완료 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참고

A) 가능하나, 추가적인 비용 지불이 필요합니다.

감리법인이 제출한 시정조치 확인결과 미진한 사항이 발견되어 추가적으 로 지적된 경우, 이에 대한 재확인은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감리법인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 습니다.

D400

Q38) 감리법인과 계약을 하여 용역진행 중에 해당 감리법인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감리법인의 가처분 신청에 의거 집행이 정지되었을 경우 감리용역 서비스를 계속 받아도 됩니까?

참고

A) 예. 계속 감리용역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가처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일 경우에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일지라도 감리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D500

Q39) 감리용역 서비스를 받는 중에 해당 감리법인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 감리계약을 해지해야 합니까?

참고

A) 반드시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6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법인의 업무 계속 등)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의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D600

| 단계 명 실시단계 활동 명 - 코드 DUUC | 단계 명 | 실시단계 | 활동 명 | - | 코드 | D000 |
|---|------|------|------|---|----|------|
|---|------|------|------|---|----|------|

Q40) 감리법인에서 감리원 또는 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해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 변경해도 됩니까?

참고

A) 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및 감리기준에서는 감리원의 변경이나 일정의 변경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유 | 관련증적 및 판단 |
|---|------------------------------|
| 1. 상근감리원 퇴사 | 퇴사 증빙서류로 확인 |
| 2. 공무, 재해, 질병 등으로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 각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
| 3.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 참가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 참하는 경우 | 타 행정기관 등의 시정조치 확인요청 공문 확인 |
| 4. 감리원의 경조사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행정기관 등의 판단 |

- D600

감리원의 변경시 동등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동등자격이란 같은 감리원 등급(수석감리원, 감리원)을 의미하나, 감리계약을 위한 기술평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자격자(예 : 회계사 등) 또는 특정기술 소지자의 경우에는 동등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갖춘 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사업추진 상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감리일정 변경 필요시는 사전에 감리법인과 협의하여 감리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리법인이 발주자에게 감리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명 - 활동 명 - 코드 -

기타 6. Q41) 감리관련 법제도, 감리기준이 필요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 이를 안내하는 별도의 웹사이트가 있습니까? A) 감리관련 법제도 및 감리기준의 변경사항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나 한국정보화 진흥원 홈페이지 (www.nia.or.kr, 정보화자료실 → 감리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감리협회(www.kaisa.or.kr)를 방문하시면 법제도 및 감리기준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42) 감리법인과 감리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하고 싶은데 이를 참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A) 정보시스템감리는 안전행정부의 소관업무입니다. 법제도, 감리점검가이드 관련 사항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정보시스템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에 문의하면 됩니다. 감리법인 및 감리원의 등록/관리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정보시스템감리협회 (www.kaisa.or.kr)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